

산후조리업

[]폐업
[]휴업
[]재개

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	성명	생년월일			
	소재지	(전화번호:)			
시설개요	명칭				
	소재지	(전화번호:)			
폐업·휴업 또는 재개일					
		년	월	일	
폐업·휴업 또는 재개 사유					
입원자 조치계획					

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(폐업·휴업·재개)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(신고)인 제출서류	1. 산후조리원 신고증(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(폐업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		수수료 없음				
처리절차								
신고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통보
신고인		처리기관 (특별자치사도, 사군구)		처리기관 (특별자치사도, 사군구)		처리기관 (특별자치사도, 사군구)		